

토론회 자료집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프로그램

10:30 사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10:35 인사말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10:40 현장진단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11:05 발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25 토론1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2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3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4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11:50 종합토론	
12:00 폐회	

목차

인사말		04
현장진단1	사회서비스원 현황과 진단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11
현장진단2	가정 내 돌봄 정책 진단	
	최영미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27
발제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6
토론1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6
토론2	사회서비스 현실과 거꾸로 가는 사회서비스 정책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0
토론3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4
토론4	토론문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57

인사말 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무려 30여분 동안 장광설을 쏟아내었으나, 정작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로 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며,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강훈식·최혜영 의원님,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주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현장 진단을 해주실 최정우 민

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님,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님,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GDP 규모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가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 역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의 전반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스스로 갹아먹는 것”이라며 더 이상 복지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이기만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금복지는 기본적인 생활을 본인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에 한해서만 제공해야 한다”며 약자복지, 선별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개념을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시혜’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1.93%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34.82%가 ‘동의한다’고 답해, ‘복지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의견이 더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 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 민간의 부정수급과 노동자의 희생,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현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

시장화와 민간화로 인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려던 차, 현 정부의 도입과 동시에 곳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고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왜 강화해나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서비스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사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회의원 남인순

인사말 2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우선 오늘의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복지 민영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초저출생·초고령화라는 곧 닥쳐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것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노인장기요양 등 민간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을 시장화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그것도 노동자들의 처우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가 시장화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지금보다 더욱 기피될 것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먼 거리도, 높은 돌봄 난이도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 복지의 영역인 이유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장애,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화, 수도권과 먼 거리에서 산다는 이유로 누군가 배제되는 사회는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복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당장의 비용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회의원 강훈식

인사말 3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행사를 함께 열어주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물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해야 할 이때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향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울 좋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결과 시설은 난립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해졌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역시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 선례를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 돌봄 이외에도 전체 돌봄서비스 중 공공 비율은 13%에 불과해 돌봄 공

백은 만성화되고,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더욱 부추기는 한편, 부족한 돌봄 인력은 해외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과 보호책임을 주창함으로써 새 정부의 ‘약자복지’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회의원 최혜영

사회서비스원 현황과 진단

최정우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I.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과 현 상황

사회서비스원은 문제가 되는 정부 출범 당시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종사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국정과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모두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위탁 중심의 전달체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확정되면서 제11조 (사회서비스원 사업 우선 위탁) 공공시설 우선 위탁내용 사실상 무력화 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기반 구축의 한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II.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경쟁 시장화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정책을 노골화했다. 서비스 복지를 도입 시장화를 가속화해 경쟁 산업화

를 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는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축소하고 규제를 풀어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복지 양극화, 불평등은 심화와 함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처우는 개선의 기대마저 꺾어버리는 정책 방향이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 임금인상, 처우개선, 돌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 왔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제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돌봄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사업비 삭감, 축소, 폐원 수순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민간업체 관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힘의 횡포로 예산삭감, 재가센터 통폐합, 어린이집 폐원으로 심각한 공공돌봄 파괴의 최선두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 축소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돌봄을 전락시키는 경쟁 시장화 산업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III. 지역별 현안

지역	현안	종합재가센터	국공립	정부위탁
서울	- 예산삭감 -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축소 -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12	9	0
인천	-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 공동교섭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 임금체계 개선 논의 - 중장년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	2	6	8
경기	- 고용안정 (기간제 계약직)	2	14	11
충남	- 2023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원 - 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 진향원 통합)	2	10	7

광주	- 광주 사회서비스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실상 파악 및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한 대응 모색 필요	3	9	5
경남	-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적용 지급 요구	2	8	6
울산	-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사회서비스원 청산)	0	1	3
대구	- 대구광역시행복진행사회서비스원	2	6	3
부산	- 예산책정 없음 - 부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향후 계획 논의 한다고 함.	0	0	0
충북	- 6월 1일 개원 -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수탁 운영			
경북	- 설립포기 (?)			

1. 서울 사회서비스원 현황

- 서울시와 국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축소 무력화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해 편성하고 지속해서 서사원을 무력화 시도하고 있다.
- 황 대표는 지난 4월 17일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하고 송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 혁신계획안에는 서사원이 오는 6월 임차가 완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 반면 민간 지원 사업은 확대. 이는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전국 사회서비스원 무력화와 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다
- 2021년 12월 475명, 2023년 2월 447명 (요양, 195명, 장활 43, 보육교사 조리원 84) => 2023년 4월 429명으로 퇴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황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경과

(1) 현 상황

2022년 12월 16일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삭감된 68억으로 결정됨.

2023년 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호자 191명이 예산복구 촉구, 안정된 돌봄을 위한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후퇴 반대, 재단 해산을 운운하는 황정일 대표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에 직접 참여함

지난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이사가 정규직 없애겠다고 밝힘.

2023년 4월 17일 자구안 발표. 어린이집을 비롯한 데이케어센터 등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중단을 밝힌 상황임.

2023년 4월 27일 교섭에서는 촉탁직 재고용 불가 입장을 대표가 밝힘.

2023년 4월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송파든든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요청

2023년 5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이용자(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발표 진행

2023년 5월 30일 서울시 추경에서 서사원 제외 다수 언론 보도

2023년 6월 13일 송파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요청 승낙 알림

2) 위기상황

(1) 예산삭감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예산삭감으로 이대로 9월로 넘어가면 실제적인 위기상황으로 봉착함(임금체불 발생 가능성).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각종 사업 축소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이 복구되면 사측이 이러한 기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향이기도 해서 단순 사업축소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는 추경이 안되도록 계속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음

(실제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된 전체 예산의 복구가 아닌 내부 유보금 42억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 상황임).

(2) 어린이집 운영 중단

7곳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보육직 직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학부모 등 주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청에 송파구는 위수탁 해지 승낙을 알려와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임.

(3) 종합재가센터 축소

서울시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4곳으로 대폭 축소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미 외부 연구결과 등으로 인력부족 등 돌봄대란이 향후 예측되는 상황에서 종합재가센터 축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음.

(4) 대표

장애에 대한 부적절 발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등이 언론에 나오며 인성측면에서 문제가 부각됨.

현 대표인 황정일은 비전문가 출신 인사로 부임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기조가 달라짐.

공공돌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대표의 교체 없이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후퇴가 가속화 될 수 있음.

2. 광주 사회서비스원 현황

○ 보육대체 교사 부당해고 철회 투쟁상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에 공공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21년 2월부터) 하면서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를 고용하여 지속해서 해고하고 있다. 갱신

기대권이 발생한 노동자도 해고하는 등 부당해고가 남발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4월 3일 전남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했으나 사용자는 사회서비스원이며, 28명에 대한 해고인정,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사용자 적격 여부 불인정하였음에도 강기정 시장이 중노위 재심 청구 강행했다. (5월 4일)

○ 광주 사서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현황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방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상황과 인권 침해로 자존감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다우면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 시도로 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노동자를 갈아 넣어 유지되는 돌봄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 대전 집단해고 관련 자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집단해고 문제

광주광역시는 영유아보육법 17조에 따른 보육대체교사를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한편 보육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통해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1년 2월부터 운영을 맡기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질의했을 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보육대체교사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업체를 공모한 결과 공공부문이 선정되었다면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회신(공공기관노사관계과-963) 하여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에 따른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음.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위 회신에 근거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 시 종사자 고용 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용유지와 승계할 것을 담은 공문을 배포한 바 있음.

그러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를 해고하였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대전광역시 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대체교사를 집단해고.

구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간 중 대체교사들의 고용 유지를 거부하여 집단 해고 발생(3월까지 60여명) ▶ 현재 대체교사들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투쟁 중(23년 1월13일부터, 4월29일 현재 107일차) ▶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은 2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해야할지 모른다면 대체교사들을 해고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대체교사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4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대전사회서비스원이 대전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체교사 집단 해고 발생. (40명 통보) ▶ 대전시청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장 면담 요구하던 대체교사를 포함하여 전원 경찰이 연행(22년 12월9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 거부

	▶ 광주광역시에서 고용노동부에 대체 교사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준수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요 구 사항	▶ 해고된 대체교사 전원 원직 복직 ▶ 대체교사 고용안정 시행	▶ 해고된 대체교사 전원 원직 복직 ▶ 대체교사 고용안정 시행
기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경과

- 2022.12.08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단체교섭 결렬
 - 2022.12.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22.12.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3차) 조정중지
 - 2023.01.02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100% 찬성 가결)
 - 2023.01.12 조합원 총회(총파업 결의)
 - 2023.01.13 총파업 선언 및 시청 로비농성 돌입(현재도 진행 중)
 - 2023.01.16 강기정 시장 일방적 입장 통보(농성장 앞)
 - 2023.01.17 신규채용 공고(모집인원 42명,관리자2명 포함)
 - 2023.02.04 강기정 시장 출근길 여성조합원 폭행,막말 사건 발생
 - 2023.02.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023.02.20 신규채용 합격자 발표(조합원 11명 합격)
 - 2023.03.08 3.8여성의날 광주여성대회 참가 강기정시장 막말 파문
 - 2023.03.10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단체교섭 재개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 결과 : 일부 인정, 일부 기각
- 2023.04.03
- 사용자는 사회서비스원이며, 28명에 대한 해고인정
 - 광주광역시는 사용자 적격여부 불인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 사회서비스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질의의 건(정책 2022-004, '22.4.5.)

2. 귀 노조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광역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례가 있음

-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는 계약절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모집·선정한 결과 4권역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선정(1,2,3,5권역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사단법인 등 선정)

-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경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지

□ 질의에 대한 답변

-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법령 등에 특정 공공 부문으로의 위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업체를 공모한 결과 공공부문이 선정되었다면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희 주무관(전화 044-202-7658)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박경희	행정사무관	황소진	공공기관노사	전일 2022. 4. 14.
				관계과장	조우관

협조자

시행 공공기관노사관계과-963 (2022. 4. 14.) 접수

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청 / www.moel.go.kr
부서충청사 11동 공공기관노사관계과(7층)

전화번호 044-202-7658 팩스번호 044-202-8080 / forei@korea.kr / 비공개(7)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 남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전남2023부해108/부노10 병합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및 광주광역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 로 자 (신청인)	김가희 등 28명(명단 별지 기재) 광주 광산구 선운로 33, 105동 703호(선암동, 진아리채)
노 동 조 합 (신청인)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8, 2층 위원장 이영훈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대리인 광주전남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 신명근
사 용 자 (피신청인)	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치평동, 우체국보험광주회관) 원장 조호권 대리인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조선익 2.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시장 강기정



보건복지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안내

1. 관련: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963(2022.4.14.)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 등 수탁기관(공공부문 제외)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수행 시, 붙임2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해당 가이드라인이 준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 내용: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

•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사업은 '가이드라인 상 민간위탁 개념'에 포함되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행정 및 예산 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님

붙임 1.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질의 회신 공문 1부,
2.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 1부, 끝.

대리인 월드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박윤성

판 정 일 2023. 4. 3.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1이 2023. 2.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5, 7, 8, 10, 12, 13, 16, 18, 19, 21 내지 23, 25, 27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1, 6, 9, 11, 14, 15, 17, 20, 24, 26, 28에게 해고기간(2023. 2. 5.~2. 28.)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3. 2.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돌봄은 국가가 책임!!

존엄하게 보장을 위해 전적인 국가 책임제도 마련촉구

노인돌봄, 장기요양현장사례-

1. 민간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

1) 노인학대가 날로 늘어난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인학대, 서비스 질 저하: 야간근무 때 노인학대가 많다는 데, 이유는 야간근무 시 1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30명까지 돌보고 있음. 2명이 출근해도, 1명은 휴게시간이 4시간~6시간까지 배정되어 있어, 1명이 근무하는 것임.

인권 침해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인력 부족을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한 감시-개인정보 보호법도 위반하면서 인력배치를 하지 않고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서비스함. 사고 발생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

2)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이 노인을 돌본다?

이주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 고 인력난 해소 대책안으로 기관장들이 제출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240만 명가량 되고, 현재 종사자 60여만 명의 4배 수준으로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나 저임금, 낮은 처우로 인해 일을 화려하지 않음.

- 노인 돌봄은 감정적 교감이 중요한데,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돌봄을 하기에는 질을 보장할 수가 없음.

3) 점점 더 낮아지는 요양보호사 처우, 수당마저 착복 당함

코로나로 확진자가 나고 코호트여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음.

복지부가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 코로나 기간에 각종 수당을 지원했으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청구가 귀찮다고 안 하는 기관들. 기관은

받았으나 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기관들. 세금으로 3/1 이상을 가져가는 기관들 등등

- 일해도 댓가를 받지 못함. 기관대표 임금 월 1천만 원, 부원장 또는 원장 (주로 가족) 월 6백만 원 이상의 임금을 가져가고 종사자는 최저임금도 채 안 되는 상황, 이익 창출이 중심

4)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하는데도 노동 조합한다는 이유로 해고, 폐업 자체가 너무 쉬운 현실

갑질, 부당한 처우로 노동조합에 문을 두드리는데, 오히려 해고되거나 폐업을 해버리는 기관이 다수

2. 공공요양기관의 문제

시 구립 요양원들 또한 심각한 문제, 시구립 요양기관들 현황

1) 쪼개기 계약- 3개월, 6개월씩 계약함(서울중계요양원)

2) 1년씩 계약, 계약종료 통보- 사회서비스원, 동대문 시립요양원 등

3)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해지통보, 불이익 변경 등- 밀양시립, 부천시립 등등

3. 개선 방안 안

1) 공공요양기관 비율 대폭 늘려야 함- 공공비율제촉구

민간은 운영책임자가 월 1천만 원 이상 임금을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된다.

수익을 남기는데 목표이기에 서비스 질, 종사자 처우개선은 관심이 없다. 이는 이용자에게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를 양성하게 됨(인력 부족, 재정투입 안 함)

2) 돌봄 노동자에게 보람을 느끼도록 처우개선을 제도화 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수가 책정 때 최저임금의 120%를 책정했으나, 받는 임금은 100%도 안 되는 구조적 문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몸만 아프고 힘들기만 하고 치우는 좋아지지 않으니 현장을 떠나게 되고, 요양보호사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음.

3) 서비스 질 향상은 이용자의 요구이자 노동자의 요구이다.

수익 창출이 중심인 민간업자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맡겨놔서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자산축적을 도와주는 꼴이며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용자들은 시 구립요양기관에 부모를 맡기고 싶어 한다.

현재 서울지역의 시 구립요양기관들 대부분은 입소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들이 다수이다. 입소를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민간요양기관에 보내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늘 안고 지내게 한다.

국민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최영미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1. 가사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1) 가사서비스의 개념

○ 발생 원천에서는 가사노동의 분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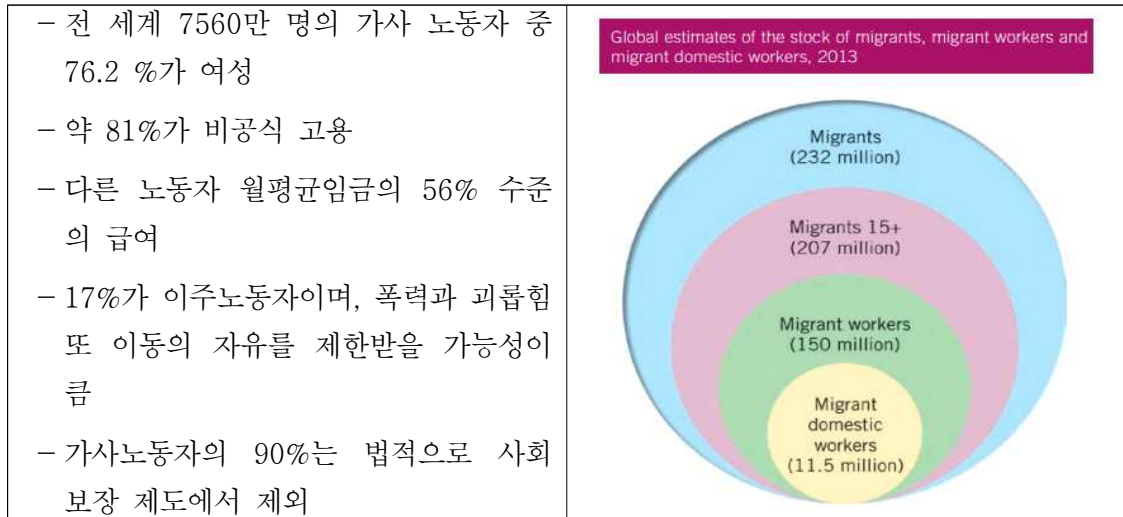
가사노동이란 가정의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말함. 보통 의식주,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 외에 육아나 고령자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해지는 노동을 포함하며, 이것이 외부에서 공급될 때 '서비스'라고 부름
이러한 노동이 외부에서 공급될 때 '가사서비스(가사지원서비스, 가사대행서비스 등)'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사노동자'라고 얘기함

○ 국가마다 범주가 다르지만 업무와 종사자 특성은 거의 동일

ILO : 가사 노동자는 개인 가구 또는 가정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인 가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직간접 돌봄이라는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집 청소, 요리, 세탁 및 다림질, 어린이 또는 노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 돌보기, 정원 가꾸기, 가족을 위한 운전, 심지어 반려동물 돌봄 등이 포함됨

한국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2021)')

☞ ‘가정내 돌봄’ ‘종사자의 다수가 여성’ ‘다수가 비공식고용이자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라는 특성은 동일. 이주가사노동자의 규모와 현황은 다름



2) 흐름과 현황

-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모든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직업안정법이 관할(플랫폼노동에서도 이 부분이 다른 플랫폼노동과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임)
- 2006년을 기점으로 직종별 분화가 생기기 시작, 2010년 전후로 분화가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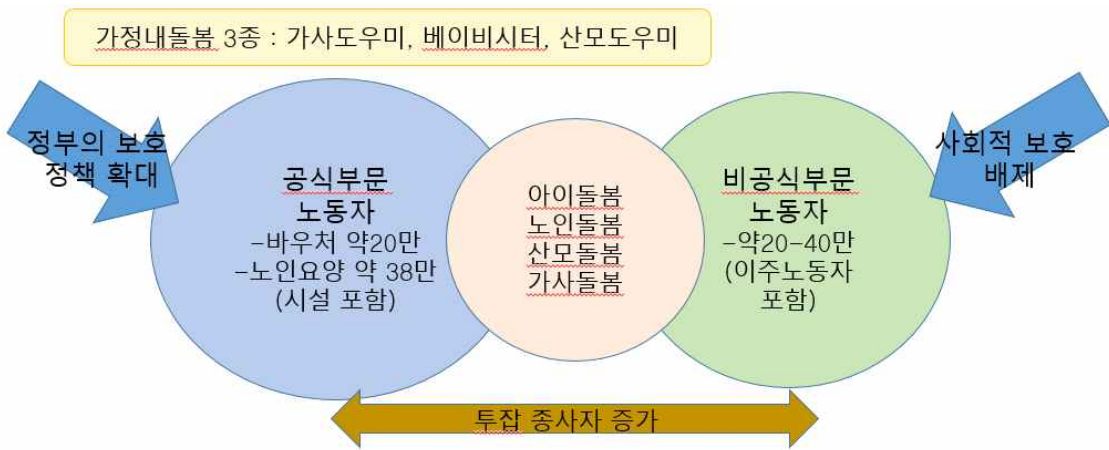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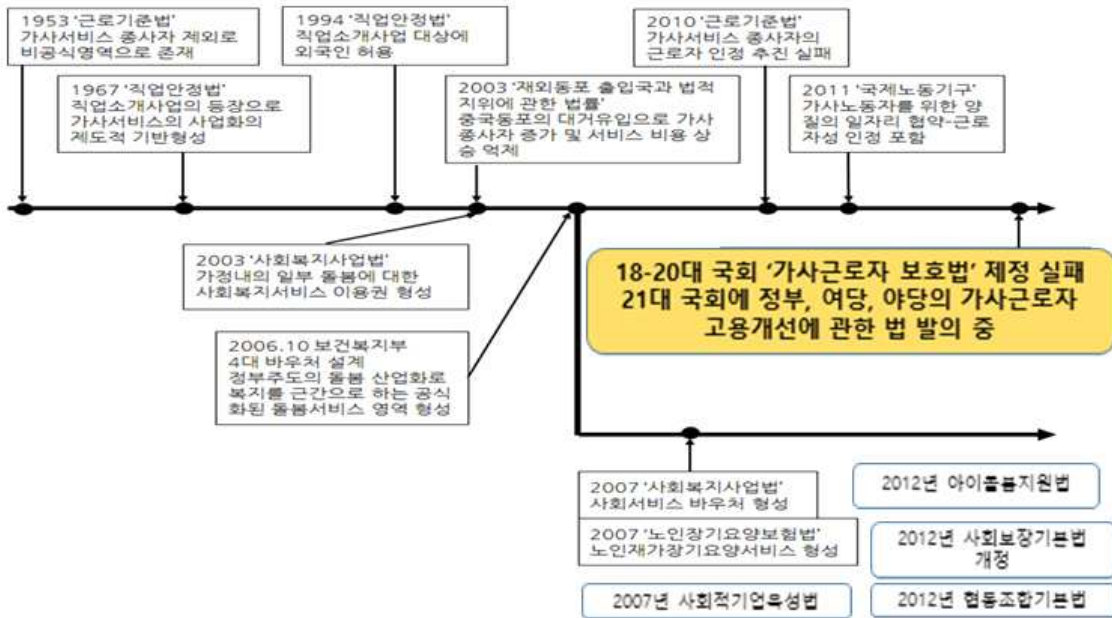
○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소는 다음과 같음

정부의 정책 :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나뉘어지고 환경의 차이가 커짐

플랫폼비즈니스의 대두 : 2015년 전후

☞ 노동조건, 노동환경, 제공기업들이 크게 변모했지만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 가사서비스=가정내돌봄서비스=domestiv work. 직종 분화에 용어가 쫓아가지 못해 혼란이 존재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2021년 현재)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

이는 가사종사자를 고용해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비공식시장에 규율을 도입하고 노동자를 기존의 사회계약 관계로 끌어들이 보호하려는 것임

2. 가정내돌봄서비스와 정부의 정책

1) 사회서비스로 포괄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 사회서비스는 돌봄과 지원 등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외부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

따라서 어떤 활동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제공하는가는 시대와 국가마다 다름
결국 사회서비스란 “특정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맞벌이, 한부모, 임신부, 다자녀 등 가사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대두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지방정부의 사업

(2020)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 가사서비스의 신사회서비스화, 지역사회바우처 개발, 가사근로자법과 연동

(2021) 가사근로자등 권리보장형협동조합, 혁신형프리랜서협동조합 육성

(2021)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 : 사적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요구 대폭 증가, 열악한 노동과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요구에 대응해 협동조합 강화

(2022) 보건복지부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중 울산, 동해시는 2023년 지투사업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022년 10월 현재)

구분	사업명	사업대상 및 기준	사업기간
서울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인 한부모가족 일부	2018년~ 현재
서울 광진구	임신부 가사돌봄지원사업	• 광진구 거주 임신부(600명)	2021년3 월~현재
서울 마포구	다자녀 가사서비스지원	• 마포구 거주 다자녀가정(50가구)	2022년4 월~현재
서울 성동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 6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 임신부	2020년6 월~현재
	1인 가구 가사지원 서비스	•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50가구)	2021년1 1~12월
서울 종로구	고위험 임신부 가사 도움 서비스 지원	•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거주한 고위험 임신부	2021년6 월~현재
서울 중구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사업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2019년5 월~현재
경기도	경기도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및 여성고용우수기업 재직 근로자 일부	2019년~ 2020년
경기 부천시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워라벨 가사지원 서비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가정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2018년~ 현재
경기 성남시	일가정양립 가사돌봄지원사업	• 성남시 거주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021년~ 현재
경기 시흥시	워킹맘 맞벌이 한부모가정 정리수납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I유형(120가구)과 II유형(50가구)으로 나누어 워킹맘, 워킹대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지원	2021년~ 현재
경기 안산시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근로자 가정 및 한부모 영세사업자 가정	2018년~ 현재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 가사돌봄서비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 맞벌이·영세사업자 가정, 고위험 임신부	2018년~ 현재
경기 양주시	직장맘 가사지원서비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주시 거주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 워킹맘(워킹대디)	2020년~ 현재
광주 광역시	임산부 막달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신부 (선착순 1,000명)	2022년~ 현재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구(100가구)	2021년~ 현재
전북 전주시	통합돌봄쿠폰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350여 명)	2021년
전남 해남군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 해남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2022년~ 현재
경남	경남형 가사지원서비스	• 경상남도 거주 법정 한부모 가족	2021년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 경남도 거주 법정 한부모 저소득 가족 18가정	2020년~ 현재
경남 창원시	저소득 부자가정 가사 지원서비스	• 부자가정 20가정	2007년~ 현재

※ 출처: 박은경·최영마·조혁진·신효진 외(2022), 가사분야 여성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문제는 공공부문의 사업 역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부재 혹은 미비하다는 것임. 이는 돌봄사회서비스 직종의 공통의 문제임
대부분 주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도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을 회피. 여기에는 수가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임

결국 사회서비스 수가는 예산에 연동될 뿐 ‘고용안정과 건강한 기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벨기에 가사바우처 : 고용을 전제로 급여, 노무비용, 적정 이윤을 반영해 단가 결정. 국가의 공적 책무인 서비스는 제외(아이돌봄)

올해 시작될 서울시 사업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가사노동자 보호에 앞선 조직들의 의견을 들어 좀더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서비스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서울시의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사업’

- 제공기관 선정에서 ‘가사근로자법 인증기업’을 우대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규정. 다만 현실을 감안하여 그밖의 프리랜서 고용도 허용
- ‘가사관리사’라는 직업명칭을 사용
- 4시간 ‘6.8만-7.2만’원의 단가 지급(이용자 자부담은 없음)
- 휴게시간 30분 의무화

○ 가사 및 돌봄서비스의 공통의 문제점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주15시간 이상의 고용과 인증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란 극히 어려움

하지만 이 법 역시 기본급, 교육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 경력 인정, 수당(연장, 연차, 주휴), 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와 사회보험 미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이는 돌봄서비스 전체의 공통문제로서, 들쭉날쭉한 급여, 직업을 통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으로써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을 불러오고 숙련이 축적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서비스 질의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요인임

2) 윤석열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 윤석열정부 110대 공약 중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생활사회서비스’의 내용

- 재가돌봄·가사+동행지원·심리지원·교류 증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으로 대상자 확대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적정부담 원칙)
- 단가 : 시간당 2만원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진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격을 가진 자를 제공인력으로 두고 서비스 제공. 다만,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 가능

- 경쟁구조 확보 : 지역 여건을 감안하되 서비스 제공권역 내 2개 이상 기관을 지정해 건전한 경쟁 및 서비스 질 제고 유도

3. 윤석열정부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생활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석열정부 정책이 사회서비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인가?

사회서비스가 이미 민영화, 시장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책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측면이 크다고 봄.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이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민영화를 축소하고(정부가 직접 혹은 공공성이 큰 조직을 전달체계로 활용)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며(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로 제공) 서비스 발전의 핵심인 일자리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적정 단가 지급 및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법 준수)임

위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대상자 확대와 소득 수준 폐지, 단가 인상은 긍정적인 제공기관 요건은 기존의 제한(장할·아이돌봄), 무제한(노인요양·지투) 사이에 있지만 수요를 따지지 않은 채 2개 이상 지정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제공인력 요건은 자격 요건, 수료 요건을 구분함으로써 전체 종사자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같은 노동자들을 더욱 구획지을 것임

더 애매한 것은 이 제도가 지금 필요한가? 현행 사회서비스제도가 이들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는가? 지금의 제도를 개편, 개선해나가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임

○ 향후 방향

생활사회서비스 개선방향 : ①제공기관을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으로 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 ②제공기관을 2개 이상으로 규정하지 말고 수요에 맞춰 선정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③공익적 제공기관을 우대할 것. 곧, 제공기관 요건에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 외에 노동중심기업(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우대 ④노인요양을 제외하고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모두 수료증이므로 장할을 예시로 든 것은 불합리함. 현장의 지속적 요구인 통합돌봄자격증제도를 설계, 적용할 것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속에 포함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인 통합발전방향을 세워야 함. 가정내돌봄노동자 100만 이상이라는 것은 임금노동자 2200만 명의 5%에 상당하는 규모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임. 이 때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인력 양성, 고용형태)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야 함. 이는 고령화시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함

시민노동단체들은 직무별 구획에 갇히지 말고 통합적 관점에서 돌봄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함. 이 과정에서 직군간 상호이해를 통해 내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누구는 파출부고 누구는 전문가냐!”)

※ 표준산업분류와 사회서비스산업분류의 간극. 사회서비스산업분류는 통계에는 유용하지만 동일산업군에 대한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돌봄직군의 통합 분류 검토가 필요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세우고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1)).

<표1> 비전 및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3대 전략	약자복지	1. 사각지대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2.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로 사회격차 완화
			3.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
		서비스복지	4.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5.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6.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
		복지재정혁신	7.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유사증복 패키지화 등)
			9.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5. 30.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공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윤정부의 핵심아젠더로 국정과제이자 3대 개혁 의

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23. 5. 30.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에 유일하게 2023년 최우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 차등부담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융합형 서비스, 개인예산제 등을 도입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평가를 강화한다.

셋째,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민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회서비스 고도화 비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5. 30.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6.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윤정부의 복지국가전략은 현금복지는 취약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서비스복지는 보편적으로 확대하되 중산층 이상의 자부담을 확대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키우고, 민간공급자의 혁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을 강화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있는 양질의 공급자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윤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비전과 핵심전략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수요확대? 사회서비스는 이미 보편적 서비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첫 번째는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화된 수급권이 보장되고 이용자 재정지원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는 3대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인 아동보육,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이다. 2021년 기준 이 세 사업의 이용자는 2백만명이 넘고 제공기관은 6만개소이며 제공인력은 약 93만 명이며 정부재정은 약 20조에 이른다. 이들 3대 돌봄서비스는 이미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소득 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표2> 3대 돌봄서비스 규모('21. 12. 기준)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아동보육	1,184,716	33,346	321,116
노인장기요양	899,113	26,547	507,473
장애인활동지원	127,363	1,061	95,046
계	2,211,192	60,954	923,635

* 출처: 양난주 외(2022)³⁾

** 자료: 보건복지부(2009-2021). 보육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2011-2022). 장애통계연보.

3) 양난주 외(2022)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여성가족부.

사회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소위 취약계층대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4종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다. 정부예산 약 1800억원, 이용자 약 40만명, 제공기관 약 7천개소, 제공인력 약 4만여 명 규모 사업으로 보육, 요양과 비교해보면 작은 사업이다. 이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도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다. 기준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사회구성원이 “취약계층”이라면 노인인구의 90%가 취약계층이고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인가? 노인맞춤돌봄사업도 중산층 대상으로 확대할 사업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소득기준이 기초연금 수급기준인 노인소득 하위 70% 기준이기에 사실상 중위소득계층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입장에서 이용자의 구매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노인장기요양 이용자인 노인의 구매력 수준은 아직까지 높다고 하기 어렵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구매력을 거론하며 실버산업의 가능성을 논하는 기사들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 90%의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 150%를 넘지 못한다⁴⁾.

<표 16> 9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규모(‘21. 12. 기준)

사업명	시작연도	소득기준	시작연도 이용자수	2021년 이용자수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2007. 8.	기중중위소득 120%~140%	224,848	264,365	5,371	21,98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08. 2.	기준중위소득 150%	2,958	125,675	1,083	18,757
가시간병방문관리	2008. 9	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18,141	8,520	397	4,780
언어발달지원	2010. 8.	기준중위소득 120%	196	435	177	309
장애인활동지원	2007. 5.	없음	109,474		1,018	111,466
발달재활서비스	2009. 2.	없음	18,005	84,411	2,327	13,3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	2014. 2.	없음	682	812	203	279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2019. 3.	없음	2,506	6,366	366	2,113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019. 9.	없음	2,015	6,241	1,212	1,214
합계			269,460	496,825	12,154	174,207

* 출처: 보건복지부(2022:264)⁵⁾

4) 이원진, 이다미, 정해식, 남윤재(2022)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의 관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개편의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보건복지부(2022) 2021년도 보건복지백서.

사회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은 “정부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 구매력 있는 이용자의 부담금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고 투입된 재정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형성하여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요 사회서비스 제도는 이미 중산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했는데도 왜 경쟁력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고,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확대된 보육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10% 가까이 확대된 보편적 장기요양제도가 있음에도 고령자의 가족은 여전히 노인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중산층을 포괄하여 이미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요 확대와 서비스 질의 혁신 그리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왜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는 (개별 제도에서 정한 서비스의 양과 유형,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차지하고) 낮은 사회서비스 질, 낮은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고용과 일상의 유지를 보장하며 제공자에게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을 제공하지 선순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에 대한 현금보상(가족양육수당, 가족인요양보호사) 유인이 공존하는 보육이나 장기요양 제도설계도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사회서비스 질 : “돌봄일자리” 가 중심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융합형 돌봄'과 '가격제도 개편'만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사회서비스의 핵심은 누차 강조하지만 돌봄이라는 휴먼서비스이고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생산되는 휴먼서비스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품질”은 달라진다. 비공식영역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사회서비스 제도화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은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여성편중 일자리’로 특징지어진다.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3년 무상보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용은 크게 증가였고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는 2008년 약 15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0.9%에 불과하다가 2021년 약 8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2%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전체임금근로자 평균의 64.3%였다가 2021년 60%로 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성편중직업인 돌봄부문의 고용을 제외하면 여성상대임금비중이 남성의 66.8%인데 비해 전체는 65.4%라서 실제 4.2%밖에 안되는 돌봄고용이 남녀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돌봄일자리 변화(2008-2021)

구분		2008년	2021년
임금근로자 규모	전체	1,770만	2,060만
	돌봄	15.4만 (0.9%)	86.8만 (4.2%)
여성 비중	전체	43.2%	44.8%
	돌봄	88%	91.9%
월평균임금	전체	186.1만원	282만원
	돌봄	119.7만원(64.3%)	169.4만원 (60%)
여성월평균임금	전체	130.8만원	218.3만원
	돌봄 외	131.4만원	223.3만원
	돌봄	104만원	165만원
남녀임금격차 (여성임금비중)	전체	57.6%	65.4%
	돌봄 외	57.9%	66.8%
	돌봄	63.8%	75%

* 출처: 양난주 외(2022)⁶⁾

사회서비스 확대를 이루고자 하는 선순환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서비스 질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의 질이다. 사실 이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불안정하고 저임금이고 사회적 인정 수준도 낮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6) 양난주 외(2022)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여성가족부.

장기요양과 같은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낮은 보상을 기초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있다(전병유, 2010⁷⁾; Muir⁸⁾, 2017.; 윤자영 외⁹⁾,2021; 김태일¹⁰⁾ 외; 2022 외 다수). 똑같이 낮은 수가를 보상하여도 제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달라졌다.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권의 임금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더 낮아졌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총선이건 대선이건 선거 때만 되면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공약사항이 되어왔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에서는 사라졌다. 유감이다.

휴먼서비스에서 제공인력의 질이 곧 서비스 질을 좌우하며, 좋은 일자리에 좋은 제공인력이 지원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이 바로 실직으로 이어지는 방문형 돌봄시장을 수십만 규모로 만들고 제공기관의 고용 책임을 크게 묻지 않으며 경력이 몇 년이 되어도 임금에 변동이 없는 시급제 일자리가 일반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가 취한 “제공기관의 시장진입 기준과 고용책임 등의 규제를 완화”한 데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제공기관에 채용될 때는 다른 모든 직업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종사자의 이동시간, 업무보고서 작성시간, 대기시간 및 교육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시간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형 서비스에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할 수 있게 다양한 시간유형의 정규직 고용 모델을 만들고, 이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재정방식, 공급방식 개선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물론 지역별 수요에 근거한 공급자 통제로 과당경쟁, 공급자 남발을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영리사업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형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몇몇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7) 전병유(2010) 우리나라 노인요양사 인력 문제와 대안적인 요양인력모델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7(3):67-91.

8) Muir, T. (2017) easuring social protectio for long-term care, OECD Working paper,

9) 윤자영, 윤정향, 함선유, 서주은, 임은재, 전보경(2021)돌봄노동자평가 개선 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충남대산학협력단.

10) 김태일, 김현경, 서주연, 최혜진, 신영민. 2022. 돌봄 경제 활성화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직접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고용모델을 선보이는 공영화 모델이 필요하다. 민간에 재정을 지원하여 혁신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왜 안되는가? 왜 정부는 규제와 관리만 해야 하는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비영리법인에 의존하거나 개인영리사업자에게 공적 서비스 확대를 맡겨버리는 선택 외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이라는 선택지를 주는 공공법인이다.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간 주도, 민간 위주로 일관되어온 사회서비스 공급 안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영화모델을 통해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는 시도마저 중단시키고 “민간 지원”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III. 시장화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 전략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은 “사회서비스 시장 육성, 사회서비스 산업화”라는 궤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명시적 언급이 자제되고 시장방식 공급이 낳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몇몇 사업이 시도되었지만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시장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수요 측면에서 대상 확대(보편화)와 공급측면 지원을 통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 도모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서 주요 사회서비스제도는 이미 보편적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구조에서 사회서비스 양의 확대는 대상확대보다 개인당 보장된 서비스 총량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보육에서는 이미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확대를 시도하였고, 노인장기요양에서는 하루 3-4시간이 최대인 방문요양의 보장성 확대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부터 포함되어있었다. 정해진 서비스 양을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15%에서 100%가 되는 구조에서 필요에 부응한 충분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대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제도 수혜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

로 공급하느냐의 문제이다.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막혔던 부분을 터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확대가 지역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급이 민간공급자의 투자에게만 맡겨졌을 때 지역간 서비스 접근성과 충분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산업화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일까? 정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공급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40억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조성하였다¹¹⁾. 이 투자가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혁신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부 정책으로 하는 아동보육, 초등돌봄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상당한 규모의 사교육시장은 자체적으로 생성,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제 고령사회를 겨냥하여 노인요양, 간병 분야에도 이미 투자와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규모와는 비교할 없이 크다. 예를 들어 몇몇 재가요양·간병분야 플랫폼 기업 등이 유지한 투자금은 각각 350억, 226억이다¹²⁾. 순수하게 소비자 구매력에 기댄 고급실버타운 산업은 자체적으로 노년기 주거, 돌봄, 요양, 의료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고가의 서비스를 낱알이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게 하면 시장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영세한 개인보다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게 되면 아마도 더 나은 서비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공기관이 투자금과 운영비를 공적 재원(수가)이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회수한다는 점에서 모든 제공기관은 동일하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보험료나 조세로 부담하는 공적 재원과 이용시점에서 지출하는 본인 부담료의 수준과 구성비율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다. 시장경쟁이건 제공기관 혁신이건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6. 14. “복지 분야 최초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에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선정.

12) 이재정, 산현준, 이승윤. 2023.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플랫폼화”, 2023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정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서비스 비용이 공적 재원에 의해 지원되는 사회서비스는 시장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적 소비와는 다른 “사회적 목표”를 가진다.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 확대는 정부가 개인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공적 개입이자 재분배다. 개인이 온전히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자원 가운데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서 사회서비스는 확대된다.

가구규모가 급속하게 축소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돌봄”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돌봄이 수혜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생계와 경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서비스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미 형클어질대로 형클어진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규범을 세우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과감한 제도혁신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서비스와 시장화

사회서비스는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하하기 위해 발달. 특히,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해결이 쉽지 않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상실의 위기에 대응(1차 사회적 위험-소득보장), 여성노동시장참여, 가족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돌봄의 위기에 대응(2차 사회적 위기-사회서비스보장)이 복지국가의 기본 기능.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핵심은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s)이며, 이는 아동(ex, 보육/초등방과후서비스등), 노인(ex,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e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시장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개입이 크게 나타남.

예를 들면, 이용자의 특성(ex, 영유아, 치매어르신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소비)가 어려움. 또한, 경험재(ex, 경험전 서비스질 확인 어려움), 공공재적(ex, 아동인적자본향상) 특성 지님.

더불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가진 누구나 접근가능토록(보편성)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마련, 서비스 조정/통제, 서비스 공급 등에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나타남.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공적재원 확보이외에 서비스 공급은 이미 시장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맥락은 최근 정부의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재정투입 확대에도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이 어려웠음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산업화’, 시장화’, ‘경쟁’ 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임. 특히, 사회서비스를 일반서비스와 같이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며,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여 단순 (저임금) 일자리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어, 복지국가 전략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듭.

대상확대와 자부담으로 수요창출?-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통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창출

모든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개별적 욕구에 대한 모든 대응을 국가에서 할 수는 없으며, 기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나 청년·중장년 돌봄이 사회적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한지 세세한 검토가 필요함.

신복지수요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시장화를 통한 방식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시장기제 활용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 있어 국가의 지원 필요함.

한편, 기본 서비스¹³⁾의 하나인 ‘돌봄’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 강화를 통한 기본욕구 충족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마련 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공공(사례)관리체계, 공적 공급 확충 등이 선

13)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세계변영연구소에서 제안하였으며, 교육, 돌봄, 주거, 교통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행될 필요가 있음.

단순히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산업적 측면의 단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만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서도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은 요원해 보임.

가격제도 개편, 규모화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 서비스 계층화, 차등화

이미 ‘사회’서비스 공급은 시장화 되어 있고, ‘규모화’를 통한 대기업의 유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 서비스의 상업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큼.

즉,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이용자 부담능력(자부담을 포함한)에 따른 서비스’로 인해 소득계층간 서비스 격차의 발생가능성이 커짐.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가가 동일하다면(공적재원+자부담) 저소득 취약 계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유인효과가 커져 저소득 취약계층이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짐.

특히, 중상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부담을 확대한다면 ‘이용자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됨.

실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가격제도 개편 내용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고정+ ‘본인부담금’차등화(탄력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등화 등은 시설간 서비스 차등화와 본인부담금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서,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 더욱 커지게 됨.

‘경쟁’ , ‘평가’ 를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 - 불안정 일자리, 서비스 질 하락.

사회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경쟁은 오히려 서비스 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특히

돌봄서비스의 경우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도한 경쟁은 서비스 질을 저해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간 간의 관계에 기반한 서비스로 저자가 지적인 바와 같이 제공인력의 질이 서비스 질을 결정하며, 시설간의 출혈경쟁은 결국 돌봄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를 악화시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킴.

또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개인, 영세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큰 요인 중 하나였음.

사회서비스 현실과 거꾸로 가는 사회서비스 정책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우리 사회서비스의 현실을 잘못 진단했고, 한국 사회서비스의 낮은 품질과 허위 및 부정행위 등과 같은 각종 시장실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다.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이용자의 양적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밝혔는데 이 같은 고도화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가 국가 정책으로 발표된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보장성 확대와 품질 제고라는 정책적인 목표와 유사하다. 이름만 고도화라고 포장했을 뿐이다. 그런데, 고도화의 개념이 모호하다. 패키지형의 융합형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과연 고품질 서비스인가? 고품질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것은 전체 사회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사회서비스 종류에만 적용되는가? 고도화의 분명한 개념 정의와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한 가지의 사회서비스라도 제대로 고도화하려면 최소한 해당 서비스의 포괄성, 적절성, 충분성, 통합성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패키지로 제시되어서 이용자가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부재하다. 그저 여러 소규

모 단위사업들의 부분적 개선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더 큰 문제는 고도화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방법에 있다.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쟁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서비스는 지난 2007년에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장을 도모할 때부터 일관되게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원리로 작동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니 사회서비스 전반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경쟁’이라는 용어를 넣고 싶어서 작은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사회서비스에서 경쟁이 과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는가? 여러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예, 전용호, 이민홍, 2018; 이기주, 석재은, 2020).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각종 돌봄서비스는 공공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화된 방식으로 인프라가 설치되면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극심한 공급 격차와 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상당수의 사회서비스가 도시지역에 집중 진입하면서 ‘제공기관의 과잉 진입·공급 --> 과잉 경쟁 --> 제공기관의 재정 불안·악화 --> 제공인력의 이직 증가 -->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즉, 경쟁이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경쟁이 품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있다(전용호, 이민홍, 2018). 그런데도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셋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규제를 더욱 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에 장기요양시설 설립의 진입조건을 기존의 매매에서 임차로의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미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더욱 풀어서 제공기관의 진입을 더 쉽게 한다면 제공기관의 난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앞에서 지적한 사회서비스 악순환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 자명하다. 사회복지적 가치를 가지고 진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보다는 단지 돈벌이를 위해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조차 기존의 과잉경쟁 보다 더 강도 높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면 기관 운영이 한층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제공기관의 불법 행위도 더욱 판칠 것이다. 공적제도로

서 사회서비스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오히려 현장의 제공기관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진입규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신규 진입기관의 옥석을 가리고, 지자체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낮은 품질의 서비스와 만연한 불법 행위를 하는 제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하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실시한 영국이 CQC(Care Quality Commission, 품질관리위원회)라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든 과잉경쟁의 고통과 불법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인력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인력에 대한 지원과 개선 없이는 사회서비스 품질은 개선되기 어렵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민간자격증이 난립하고 있고 이미 이들이 주요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제대로 된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돌봄영역에서는 이미 제공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넘어어서 돌봄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급하게 인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력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돌봄공백에 대응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외국 이민으로 인력이 유입된다고 해도 돌봄인력의 상당부분은 내국인이 차지하는 게 선진국의 경험이다. 즉, 국내 돌봄 인력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인의 이민만을 외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저 추진전략으로 “민간에서 혁신적 서비스 제공, 정부는 시장 관리자 역할에 집중”한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요컨대, 이미 과도한 시장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시장 실패

가 매우 심각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사회서비스 정책은 더욱 시장화 된 방식의 민간, 경쟁,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사회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 자녀,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이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시급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최서연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훌쩍 넘어선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저기서 돌봄과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를 비롯한 많은 양육자들은 이미 가시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막연한 불안감까지 더해 편치 않은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국가는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일이 아니며,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이라는 공허한 문구와, 내용을 뜯어볼수록 모순점과 공백이 가득한 정책 내용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보수정권에 의한 급격한 공적돌봄 정책 변화는 이용자로서 공적돌봄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소아과 대란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 신설 및 확대, 발달장애아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및 돌봄 지원 등 진실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집중 투자에 대해 제대로 인식

은 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표의 논리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고려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아닙니까?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돌봄이 지나치게 민영화, 시장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미 그 부작용이 언론을 통해 상당수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도 많을 것입니다.

돌봄 주체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등 사적 영역으로의 위탁은 돌봄이 결국 이윤 추구라는 목적 달성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간만의 잘못입니까? 자원 아동 수가 곧 어린이집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체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국가의 길로 가려면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비중이 있어 국공립이 약 5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민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사회서비스를 민영화,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조정과 국공립 비중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런 태도가 나오니 ‘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사회복지 분야, 특히 사회서비스에 있어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여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및 정책의 무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관한 분석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요약해 보면, 결국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아이까지 낳아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기로 선택해 지금 키우고 있는 제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더 크고, 제 경력과 일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양육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며 형제자매도 없어

돌봄이 오롯이 제 책임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 그나마 낡기로 결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민영화 방향이 추진되었다면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육자이자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20여 년간 일해 오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 20대 여성들이 제게 “교수님을 보면 더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가 있고, 여성들은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출산율이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평등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소속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정치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양육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4

토론문

장은섭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3. 6. 19.

발행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담 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훈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